I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사용법

1.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

1.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개요

1.1.1. 목적

○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,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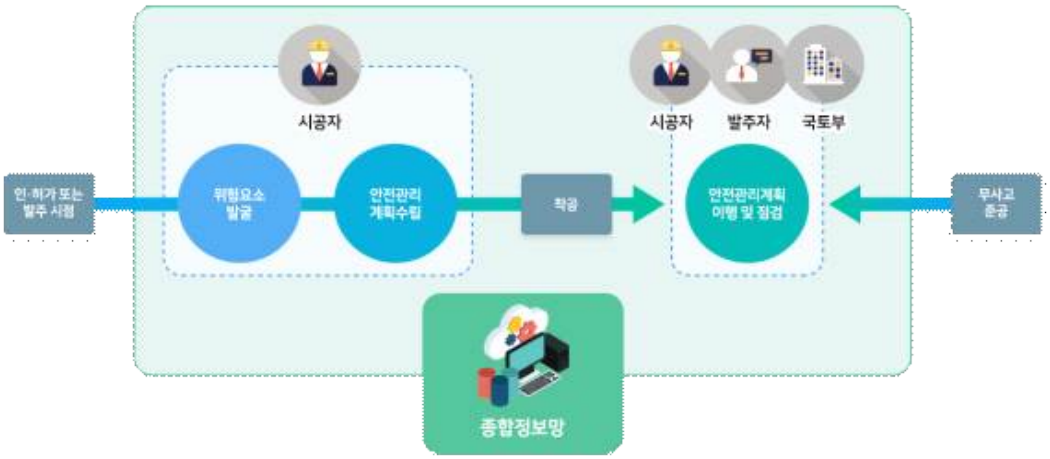

1.1.2. 관련근거

○ 수립 근거 : 『건설기술 진흥법』 제62조

※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① **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**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**안전관리계획(이하 "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**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**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**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**안전관리계획서 사본**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수립 기준 : 『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』 제99조 및 『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』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(제58조 관련) [별표 7]

1.1.3. 작성·제출 주체,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

- **제출처**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www.csi.go.kr)
- **작성 주체** :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
- **제출 주체** :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
- **제출 시기** :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**7일 이내**

※『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』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
⑦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**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**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, **수정이나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**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**적용대상 : 2019. 07. 01 이후** 입찰공고**(민간공사는 인가·허가·승인 기준)**하는 건설공사

※ 부칙 제6조(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)

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 <제16135호, 2018. 12. 31>

1.2.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거
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.S.I)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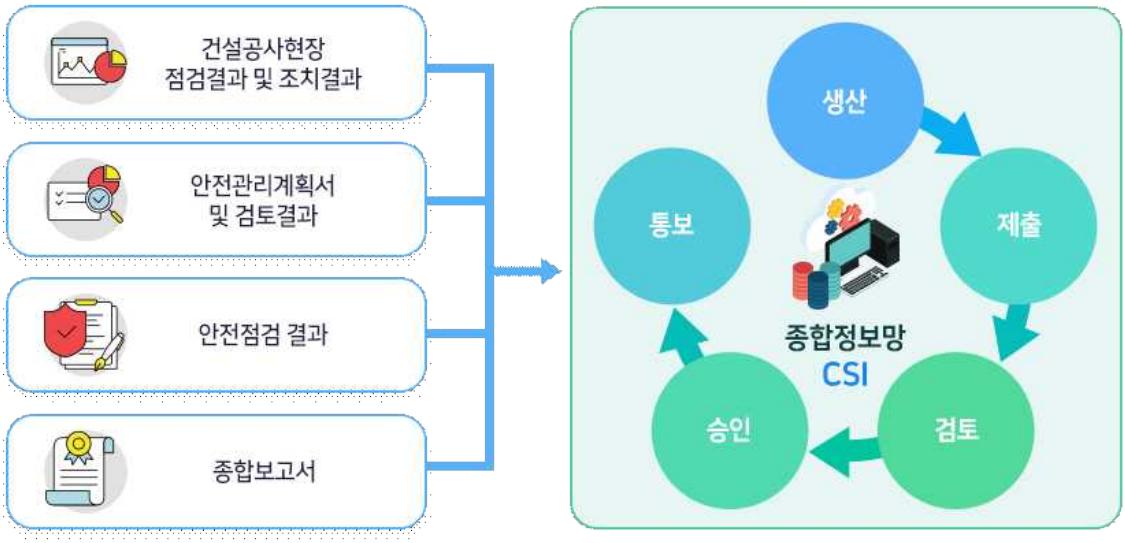

1.2.1. 관련근거

○ 『건설기술진흥법』 제62조제15항

※ 제62조제15항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⑮ **국토교통부장관**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이하 "정보망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○ 『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』 제101조의4

※ 제101조의4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
① **국토교통부장관**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**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**(이하 "정보망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**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**
3.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**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**
4.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**안전점검의 결과**
5.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**종합보고서**

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**생산·제출·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**는 해당 정보를 **생산·제출·검토·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**해야 한다.

1.3.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1.3.1.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※『건진법 시행령』제98조제1항

1. **1종 시설물*** 및 **2종 시설물***의 건설공사

   * **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**

2.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3. 폭발물 사용으로 **주변***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
   * **주변 :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**

4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5.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6. 『주택법』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7. 『건설기계 관리법』 제3조에 따라 등록된 **건설기계***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
   * **건설기계 : 천공기(높이 10M이상)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 (※ 리프트카 해당 없음)**

8. 『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*가설구조물***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   * **가설구조물**

구분	상세
비계	·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· 브라켓(bracket) 비계
거푸집 및 동바리	·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(갱폼, RCS, ACS 등) 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
지보공	·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·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가설구조물	·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·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·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·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(FCM, ILM 등) ·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

9. 상기 건설공사 외 **기타 건설공사***

   * **기타 건설공사**

-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
 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1.4.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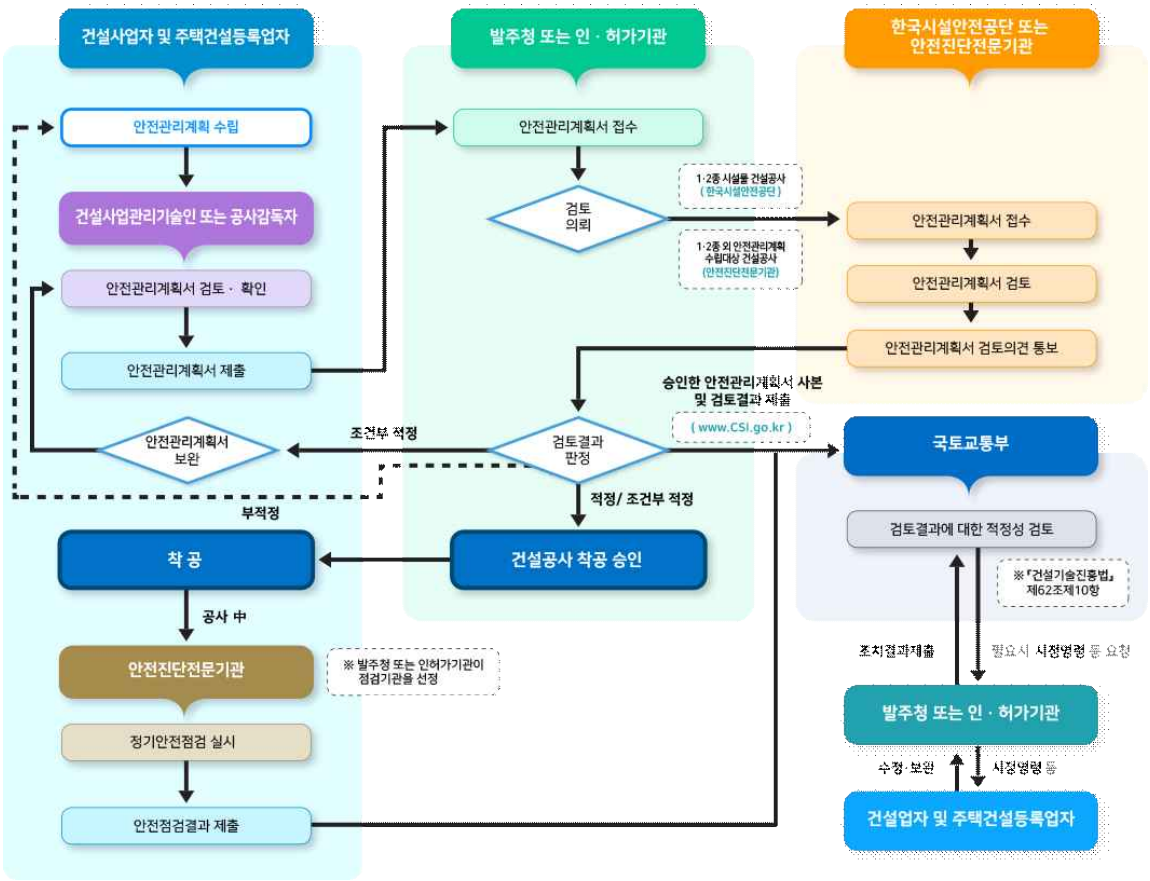

2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- 시공사

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관리계획서는 **시공사**, **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**, **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**, **안전관리계획서 업무 담당자(한국시설안전공단)**의 4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. 아래 사용자 지침서는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**회원가입 및 승인**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설명합니다.

***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업무 흐름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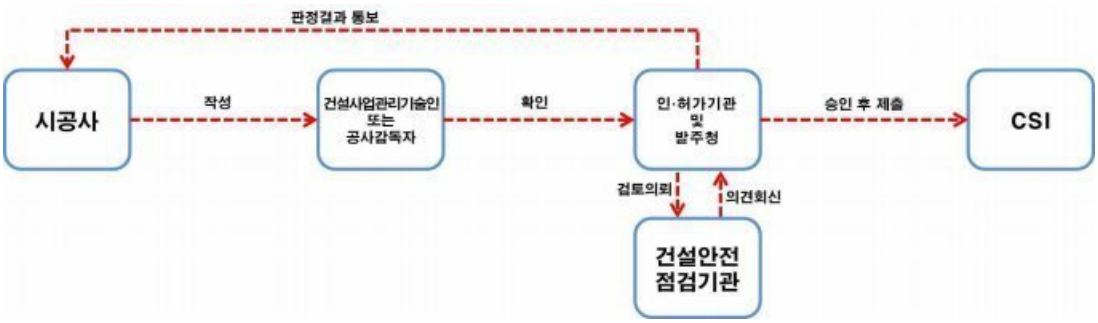

2.1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

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작성은 **시공자**의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	메인 화면에서 상단메뉴에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메뉴를 선택

2.2. 검토결과 제출 목록

시공사의 사용자는 검토결과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중인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을 조회합니다.

목록을 선택하면 공사개요가 입력중인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며, **신규 안전관리계획서**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검색기능	공사명 등의 검색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을 검색하는 기능
2	검토결과 목록	제출 전 작성단계에 있는 항목들의 목록을 조회 가능
3	신규 검토결과 제출	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를 새로 작성하는 버튼

2.3. 공사개요 작성

신규 검토결과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하는 화면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공사에 대한 **개요**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.

2.3.1. 공사개요 입력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검토의뢰 불러오기	공단 검토 시 불러오기 기능 가능
2	검토유형	검토기관 선택 (한국시설안전공단 / 안전진단전문기관)
3	공사명	-KISCON공사명 사용시 해당 현장 공사명 "돋보기" 눌러 검색 ※ 공사명 찾기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에 먼저 내용(시공사 등) 입력 필요 -KISCON공사명 미사용시 공사명을 직접 입력하고 하단의 "인·허가 대장 공사명"에서 선택
4	현장 소재지	"우편번호" 버튼을 눌러 현장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
5	구분	해당 공사의 공공·민간 및 토목·건축 구분을 선택하고 연면적과 최대층수 입력
6	공사기간	해당 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입력

* KISCON공사명 사용시

공사명을 입력하기 위하여 KISCON과 연계한 공사대장 정보를 제공하며 공사명 입력화면의 돋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출력되는 화면입니다. KISCON 공사대장에 등록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으며, **안전관리계획서 등록을 위해 먼저 KISCON 공사대장을 등록**해야 합니다.

※ KISCON 등록시 해당내용은 익일에 CSI로 반영됨(익일 공사명검색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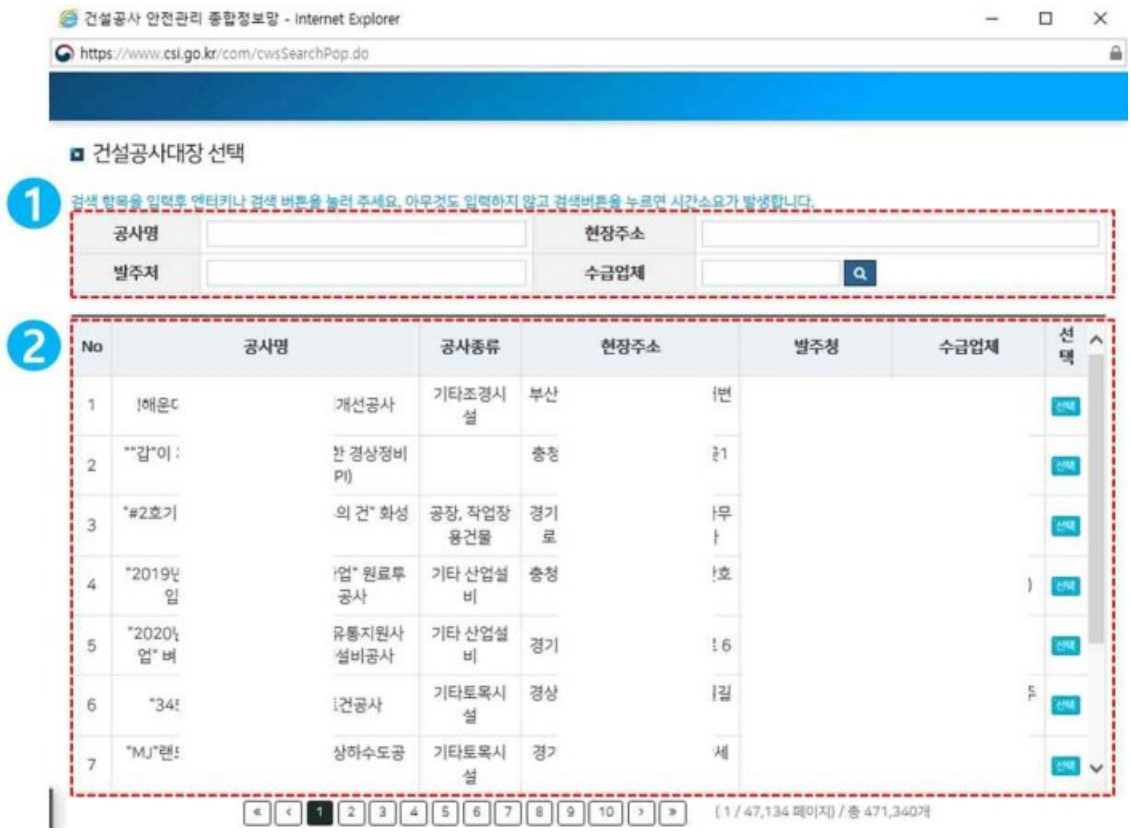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건설공사대장 검색	여러가지 검색조건으로 건설공사 대장 검색 ※ 공사명 찾기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에 먼저 내용(시공사 등) 입력 필요
2	건설공사대장 목록	검색한 공사명을 선택

2.3.2. 공사개요 기관정보 입력

공사개요 입력 후 **기관정보**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시공사	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"돋보기"로 검색하여 입력
2	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	해당 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담당자를 "돋보기"로 검색하여 입력
3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	-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를 "돋보기"*로 검색하여 입력 - 직접 감독일시 "직접감독" 선택 - 감리사가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 "해당 없음"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정확히 선택 ※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/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명/담당자를 검색하여 입력
4	검토기관	검토기관명을 "돋보기"로 검색하여 입력하고, 책임기술자를 기입

* 시공사(담당자), 감리자(담당자)의 검색이 불가할 경우 각 담당자가 본 시스템에 **회원가입** 필요

2.3.3.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

기관정보 입력 후 **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**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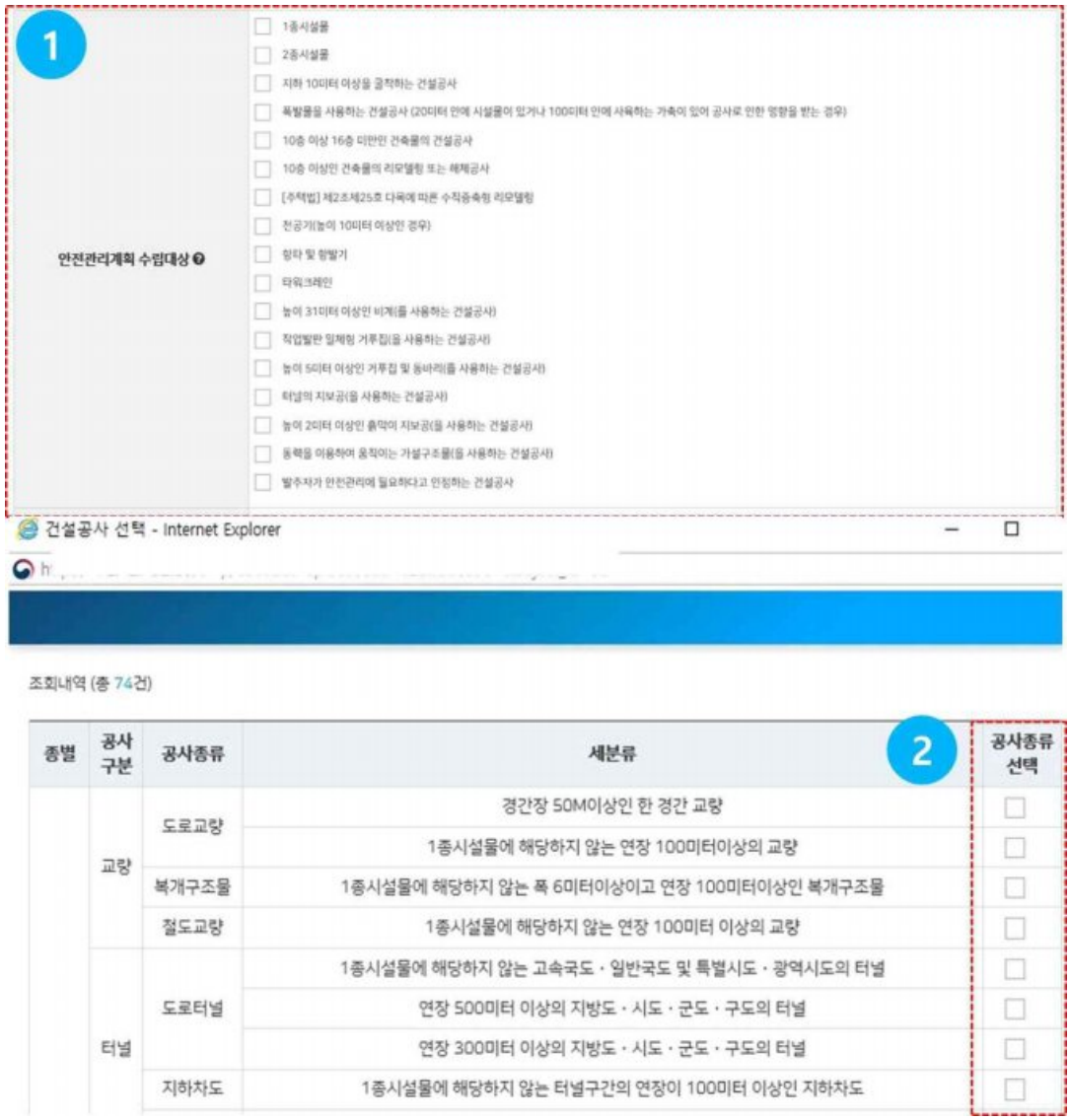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	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모두 선택 ※ 기본적인 수립대상이 누락된 경우 반려됨
2	1·2종 시설물 선택팝업	1·2종 시설물 선택 시 팝업리스트에서 해당공사 종류 선택

2.3.4.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

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선택 후 **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**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	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선택
2	취약공종 선택팝업	심의 및 검토대상에서 취약공종을 선택할 경우 팝업 리스트에서 해당 취약공종을 선택해야 함

2.3.5.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(공공 건축물_SOC)

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선택 후 **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**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 **민간 공사의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에 해당되지 않아** 테이블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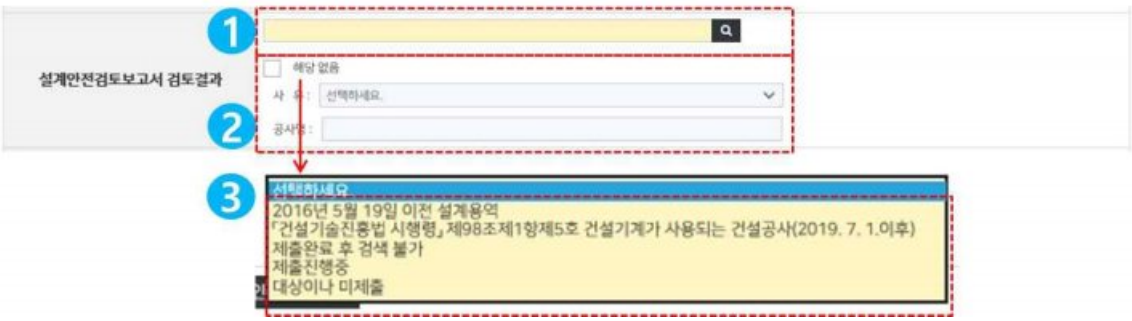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	**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**를 "돋보기"로 검색하여 입력
2	해당없음	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**사유***와 **공사명**을 기입

***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제출 "해당 없음" 사유 선택시 주의사항**

- 잘못된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 반려됨
- [공사개요] → [발주청 및 인허가기관] 지정 후 [설계안전성검토] → [검토결과 제출] → [처리현황 조회]에서 **제출처리단계*** 조회 가능
  * 제출(대기) : "제출진행중"
  * 제출완료 : "해당 없음" 선택하면 안됨. 돋보기로 검색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기입
  ※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만 "제출완료 후 검색불가" 선택
- "**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제5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**"선택은 「건설기계 관리법」제 3조에 따라 등록된 **건설기계***만 수립대상일 경우 해당
  * 천공기(높이10m이상), 항타 및 항발기, 타워크레인

2.3.6. 비고입력 및 공사개요 저장

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입력단계 후 **비고** 입력을 하고,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,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전 **임시 저장**을 하는 단계입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판정결과 승인서 양식 다운로드	"승인서 예시" 클릭시 검토 결과에 대해 발주청 또는 인·허가 기관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통보하는 승인서 양식 다운 가능
2	비고	기타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
3	추가	비고 사항이 여러 개이거나 수정시 추가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 "추가" 버튼을 눌러 비고 사항을 입력
4	임시저장	임시저장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요청 전까지 조회 및 수정 가능 ※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, 안전관리계획서는 저장 후 입력 가능 탭 생성

2.4.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

공사개요를 입력 후 "임시저장"을 하고나면 **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**와 **[안전관리계획서]** 탭이 활성화 됩니다. 그 중 **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**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

2.4.1.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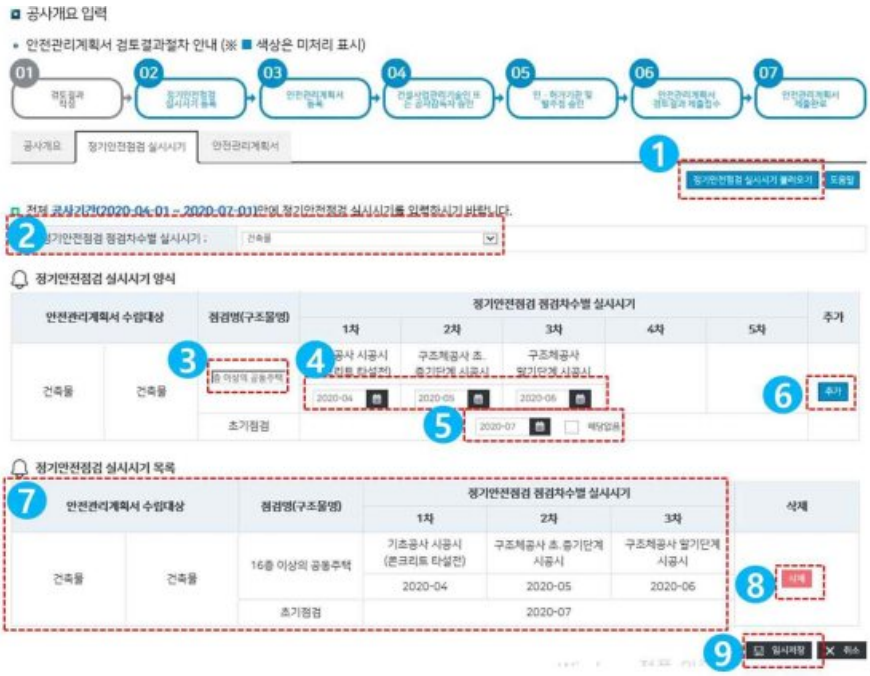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불러오기	이전에 등록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불러올 경우 팝업리스트에서 불러오기 ※ 신규의뢰의 경우 해당없음
2	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	선택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양식이 하단 테이블에 생성
3	점검명(구조물명)	공사종류별 점검명 또는 각 구조물명 입력
4	점검시기 입력	각 점검 차수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(년/월)를 입력
5	초기점검 입력	해당 수립대상의 초기 점검일 입력 ※ 시설물 아닐 경우 해당없음
6	추가	입력한 정보를 확정하여 하단의 테이블로 이동 ※ 추가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점검시기 수립에서 누락·삭제됨
7	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	확정하여 추가한 점검시기 목록
8	삭제	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 삭제 가능
9	임시저장	※ 임시저장을 하지 않으면 입력 내용 누락·삭제됨

2.5. 안전관리계획서

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입력 후 **안전관리계획서**를 첨부하는 단계입니다.

2.5.1. 안전관리계획서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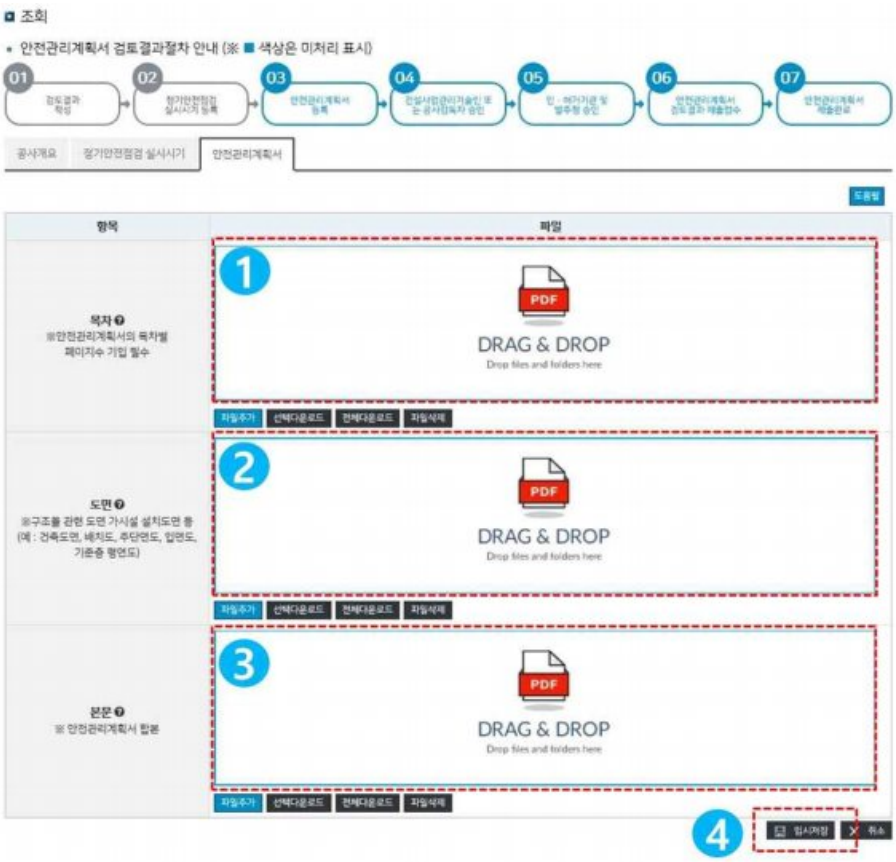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목차	검토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목차를 PDF 파일로 첨부 ※ 계획서의 세부 목차별 쪽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야 함
2	도면	검토 받은 현장의 도면을 PDF 파일로 첨부 ※ 도면: 본구조물 상세도, 가설구조물(비계, 동바리, 가교, 벤트 등)의 조립도(시공상세도 포함) 등
3	본문	검토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을 PDF 파일로 첨부 ※ 목차(①)의 쪽번호와 일치해야 함 ※ 안전관리계획서는 합본으로 첨부
4	임시저장	※ 임시저장을 하지 않으면 첨부 파일 누락됨

2.6. 감리사 또는 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

앞서 작성했던 [공사개요], 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, 그리고 [안전관리계획서] 첨부 후 임시저장을 하면, [안전관리계획서] 탭 우측 하단에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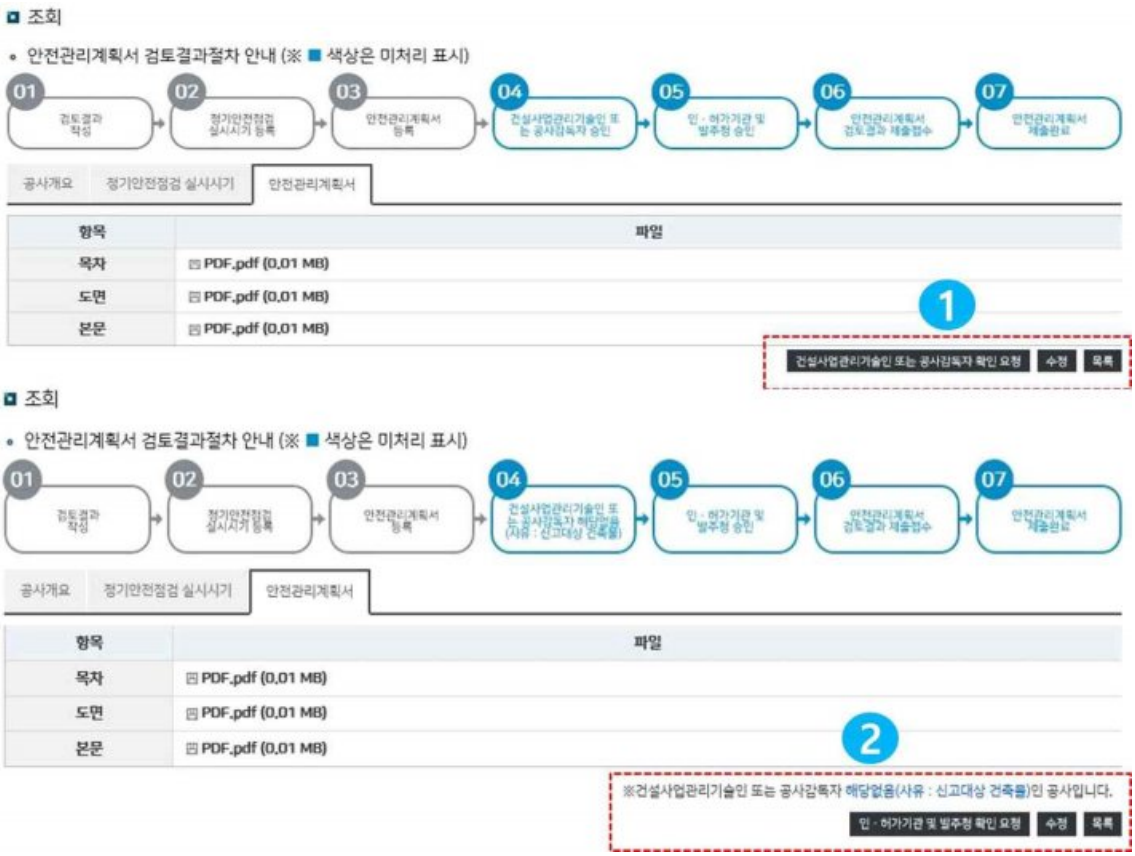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요청	* [공사개요]에서 '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'를 지정한 경우
2	인·허가 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	* [공사개요]에서 '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'를 "해당없음"이나 "직접감독"으로 선택한 경우

※ 감리사 또는 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시 주의사항

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요청(*감리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·허가 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)시 "확인"버튼으로 최종 요청을 하고나면, 앞서 작성했던 [공사개요], 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, [안전관리계획서]의 **수정이 불가**합니다.

요청 완료 전, 입력하신 **검토결과 제출 사항들을 한번 더 확인**하시길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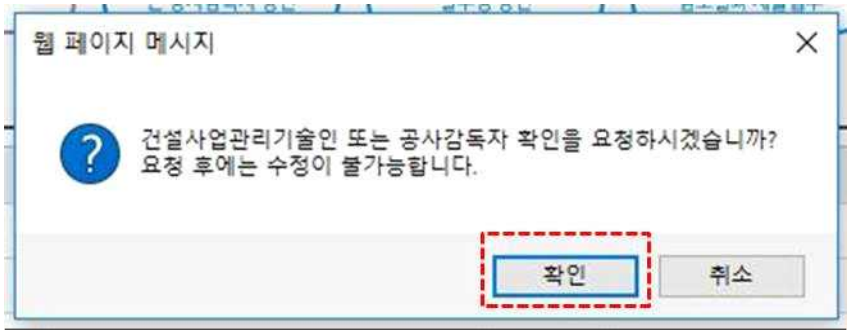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-	확인	"확인"버튼 클릭시 감리사 확인 요청 또는 인·허가 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 단계로 넘어감

2.7. 진행상태

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요청 후 "진행상태" 기준으로 **[4. 감리사 확인요청] → [5. 발주청 확인요청] → [6. 검토결과 제출접수]** 순으로 검토결과 제출접수가 진행됩니다.

*** 중도 반려처리 될 시**

반려사유에 대한 수정 후 재 제출 하여 [4. 감리사 확인요청] → [5. 발주청 확인요청] → [6. 검토결과 제출접수] 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.

*** 최종 접수 승인될 시**

[7.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완료] 상태로 접수가 완료되고, 이후 변경/보완 제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***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업무 흐름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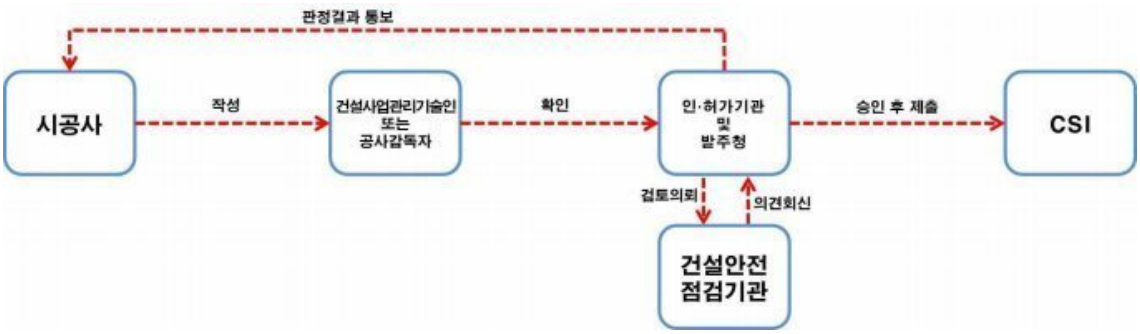

2.8. 변경·보완 제출

변경·보완 제출은 **검토결과 최초 제출 승인 이후**, 안전관리계획서를 **보완**했거나 안전관리계획서가 **변경**된 경우에 **기존에 검토 받은 내용에서 보완 및 변경된 부분만 작성**하여 [4. 감리사 확인요청] → [5. 발주청 확인요청] → [6. 검토결과 제출접수]의 진행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변경·보완 제출	변경·보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·보완된 사항을 시공사가 입력하여 검토결과 재제출

3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-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

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관리계획서는 **시공사**, **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**, **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**, **안전관리계획서 업무 담당자(한국시설안전공단)**의 4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. 아래 사용자 지침서는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**회원가입 및 승인**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설명합니다.

***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업무 흐름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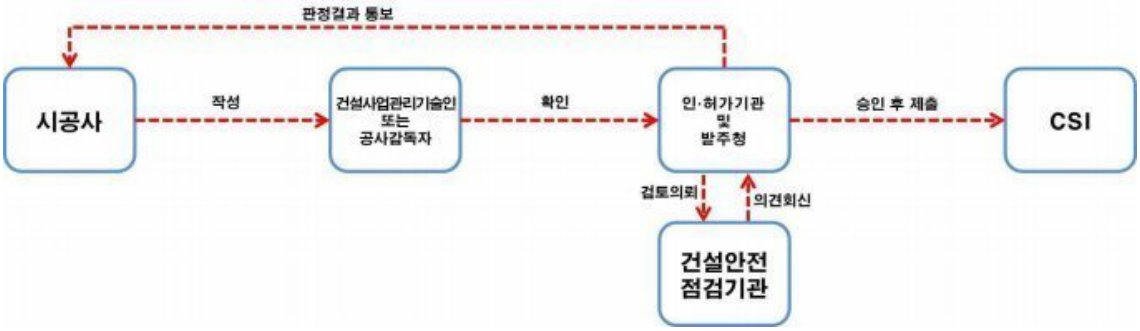

3.1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

시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감리확인은 **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**가 할 수 있습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	메인 화면에서 상단메뉴에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메뉴를 선택

3.2. 처리현황 확인

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사용자는 검토결과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중인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을 조회합니다. 목록 중 처리현황이 **"감리사 확인 요청"**일 경우 감리사는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[공사개요]와 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, [안전관리계획서]를 확인한 후 **감리확인**을 해야 합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검색기능	공사명 등의 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검색하는 기능
2	검토결과 목록	제출 전 작성단계에 있는 항목들의 목록을 조회 가능
3	진행상태	"감리사 확인 요청" 단계에 있는 항목들을 확인 가능

3.3. 감리확인

감리사가 **[공사개요], 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**, [**안전관리계획서]**를 확인 후 **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**하는 단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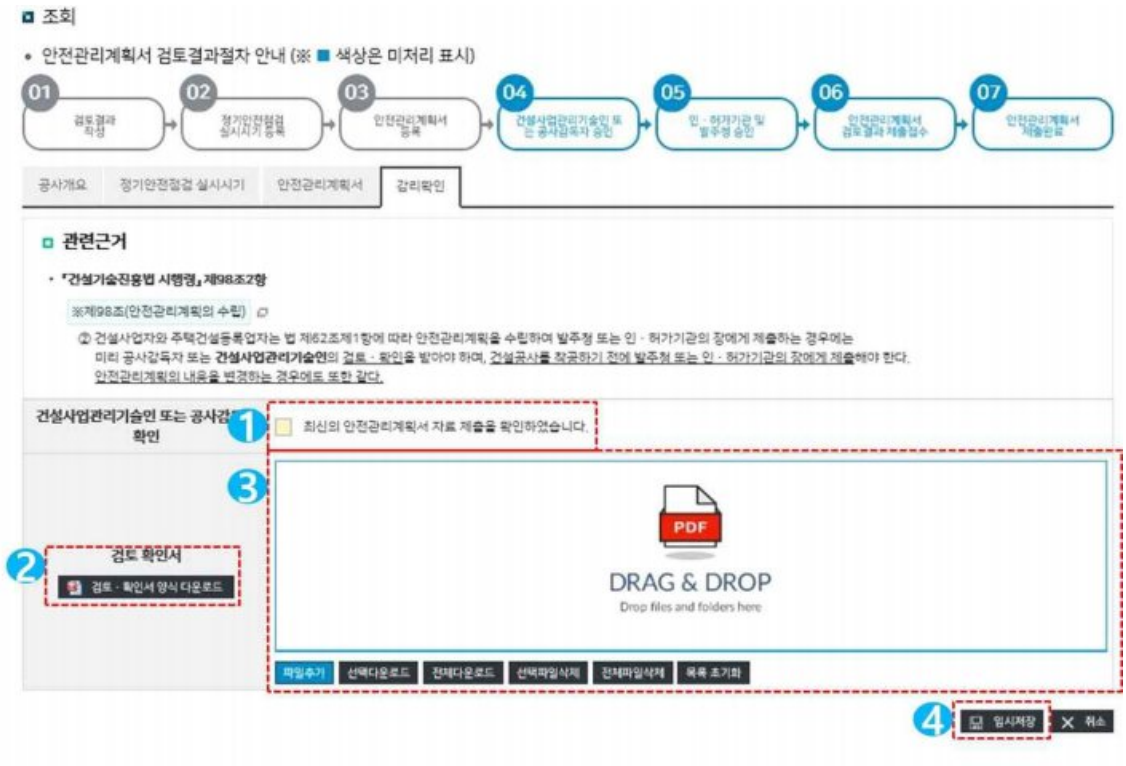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	시공사가 작성한 **[공사개요], [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], [안전관리계획서]**를 확인한 후 체크
2	검토 확인서 양식* 다운로드	검토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3	검토 확인서 제출	작성한 검토 확인서를 첨부
4	임시저장	저장 후 승인/반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 활성화

* 검토 확인서 양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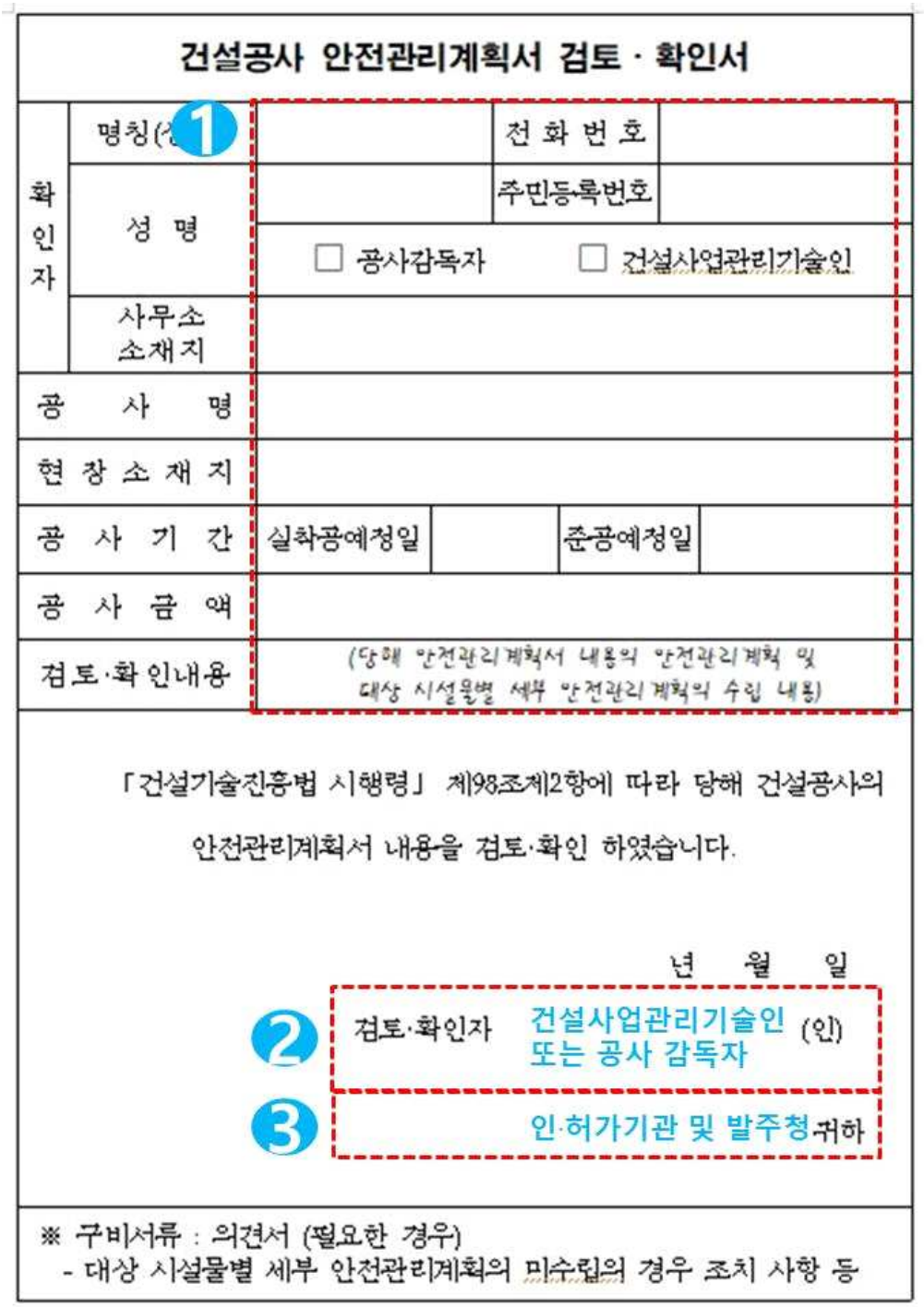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· 확인서

확인자	명칭(성) ①		전 화 번 호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	☐ 공사감독자 ☐ 건설사업관리기술인		
	사무소 소재지			
공 사 명				
현 장 소 재 지				
공 사 기 간	실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
공 사 금 액				
검토·확인내용	(당해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의 안전관리계획 및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내용)			
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제2항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검토·확인 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② 검토·확인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 감독자 (인)

③ 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귀하

※ 구비서류 : 의견서 (필요한 경우)
-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의 경우 조치 사항 등

3.4. 감리사 승인/반려

감리확인 후 **승인/반려 여부**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개요	감리확인을 한 담당자 및 확인 일시를 확인 가능
2	승인/반려 처리	반려시 반려사유를 입력
3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처리완료	승인시 '발주청 확인중' 단계로 진행 반려시 '시공사 작성중' 단계로 진행

※ 반려

감리사·발주청·공단 반려 단계일시 반려 사유에 대한 **수정 권한**은 **시공사**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.

시공사의 사용자는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후 다시 **"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요청"**을 하여 **감리사**에게 **확인 요청**을 받아야 하며, **[4. 감리사 확인요청] → [5. 발주청 확인요청] → [6. 검토결과 제출접수]**의 순으로 다시 접수 진행을 하게 됩니다.

※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처리완료시 주의사항

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처리완료시 "확인"버튼으로 최종 요청을 하고나면,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확인 단계로 진행되며 첨부했던 검토 확인서의 **수정이 불가**합니다. 요청 완료 전, **한번 더 확인**하시길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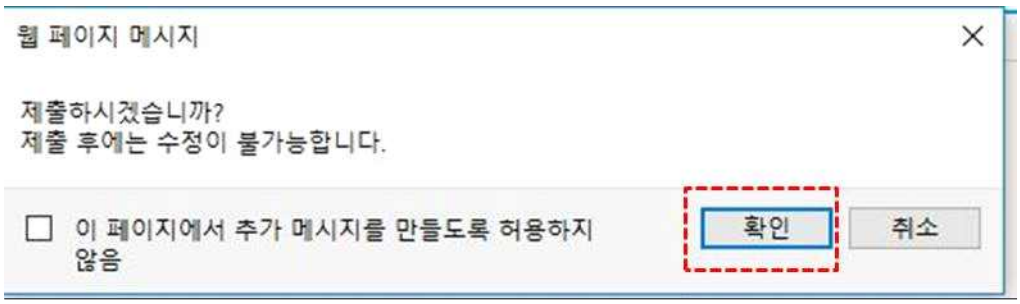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-	확인	"확인" 버튼 클릭시 '발주청 확인 요청' 단계로 넘어감

4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-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
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관리계획서는 **시공사**, **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**, **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**, **안전관리계획서 업무 담당자(한국시설안전공단)**의 4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. 아래 사용자 지침서는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**회원가입 및 승인**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설명합니다.

***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업무 흐름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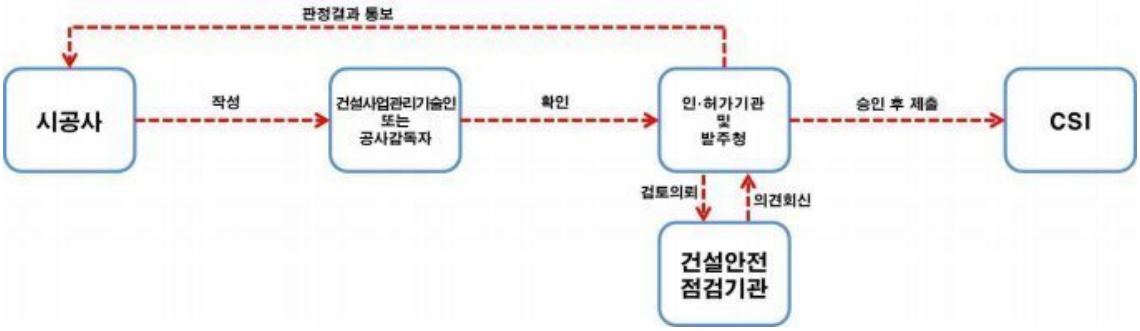

4.1.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

시공사 또는 감리사로부터 요청받은 발주청 확인 요청은 인·허가기관 또는 발주청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	메인 화면에서 상단메뉴에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메뉴를 선택

4.2. 처리현황 확인

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사용자는 검토결과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중인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을 조회합니다. 목록 중 처리현황이 **"발주청 확인 요청"**일 경우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담당자는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**건설안전점검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)**으로부터 회신된 **검토의견서와 판정결과 승인서 파일을 첨부**합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검색기능	공사명 등의 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검색하는 기능
2	검토결과 목록	제출 전 작성단계에 있는 항목들의 목록을 조회 가능
3	진행상태	"발주청 확인 요청" 단계에 있는 항목들을 확인 가능

4.3. 검토결과 제출

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심사결과와 **검토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**을 선택하고 **검토의견서와 판정결과 승인서를 첨부**하는 단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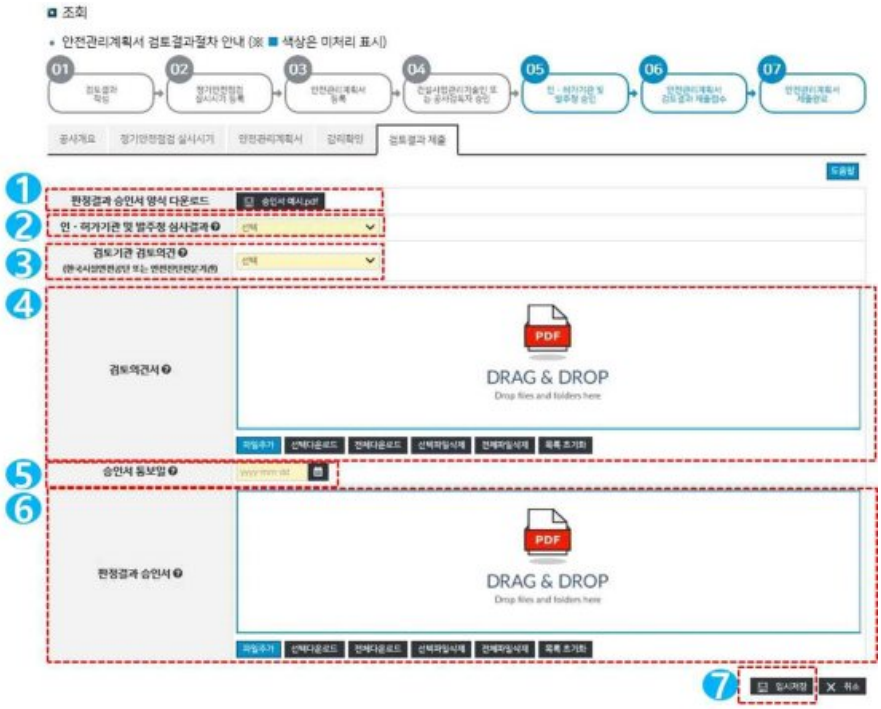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판정결과 승인서 양식 다운로드	판정결과 승인서의 양식을 다운
2	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심사결과	검토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정한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심사 결과를 선택
3	검토기관 검토의견	검토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선택
4	검토의견서	건설안전점검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)으로부터 회신된 검토의견서를 PDF파일로 첨부 ※ 검토의견서는 수신공문을 포함해야함
5	승인서 통보일	판정결과 승인서의 통보일을 입력 ※ 첨부된 판정결과 승인서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입력
6	판정결과 승인서	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→ 시공사(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)에게 발송한 판정결과 승인서 첨부 ※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
7	임시저장	저장 후 승인/반려 처리 테이블 활성화

4.4.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승인/반려

모든 사항 입력 후 **승인/반려 여부**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.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1	승인/반려 처리	반려시 반려사유를 입력
2	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처리완료	승인시 '검토결과 제출접수' 단계로 진행 반려시 '발주청 반려' 단계*로 진행

※ 반려

감리사·발주청·공단 반려 단계일시 반려 사유에 대한 **수정 권한**은 **시공사**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.

시공사의 사용자는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후 다시 **"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요청"**을 하여 **감리사**에게 **확인 요청**을 받아야 하며, **[4. 감리사 확인요청] → [5. 발주청 확인요청] → [6. 검토결과 제출접수]**의 순으로 다시 접수 진행을 하게 됩니다.

※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처리완료시 주의사항

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처리완료시 "확인"버튼으로 최종 요청을 하고나면, 인·허가기관 및 발주청 확인 요청 단계로 진행되며 첨부했던 검토 확인서의 **수정이 불가**합니다.

요청 완료 전, **한번 더 확인**하시길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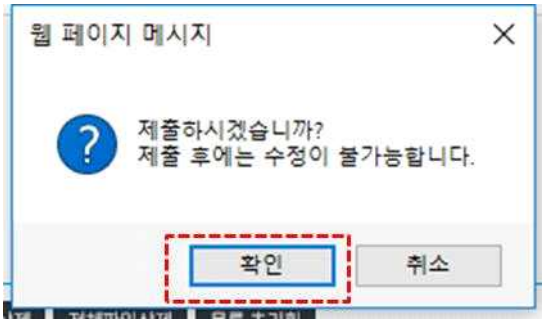

○ 화면설명

항목	화면이름	설명
-	확인	"확인"버튼 클릭시 안전관리계획서 '검토결과 제출접수' 상태로 넘어감

- 끝 -